|  |  |  |
| --- | --- | --- |
|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14]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 3월 26일 제4차 행장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주소천  2014년 6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를 규범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분지기구,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분지국(이하 “외환국”)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대중의 예금을 수신하는 금융기구와 정책성 은행을 의미한다.  (2)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는 은행이 고객을 위해 또는 자가 경영활동 수요에 따라 처리하는 인민폐와 외국환간의 교환업무를 의미하며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 업무를 포함한다.  (3)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는 거래성립일 후 2업무일 내에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가격이 거래성립일 당일의 환율인 결제 및 매도업무를 의미한다.  (4) 인민폐 및 외환 파생상품 업무는 선물환 결제 및 매도, 인민폐와 외환 선물, 인민폐와 외환 SWAP, 인민폐와 외환 옵션 등 업무와 그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5)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및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고 은행간 외환시장거래 등 인민폐와 외국환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하는 외환준비금을 의미한다.  **제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며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며 본 방법과 기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시장 진입과 퇴출**  **제6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금융업무 자격 구비  (2) 완전한 업무관리제도 구비  (3) 업무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H/W와 S/W설비 구비  (4) 상응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고급관리인원과 업무인원 보유  **제7조** 은행이 인민폐 및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 구비  (2) 완전한 업무관리제도 구비  (3) 상응하는 업무 경력을 갖춘 고급관리인원 및 업무인원 보유  (4)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종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부합  **제8조** 은행은 경영수요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자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한 파생상품 업무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응당 본점 은행이 통일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제외한다.  정책성 은행, 전국성 상업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의 비준한다. 기타 은행은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에서 심의 비준한다.  **제10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응당 상응하는 업무자격을 구비한 상급 기구의 수권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1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기간 중에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신설된 은행이 외환국에 외환국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명칭변경, 영업주소 변경,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종사하는 분지기구의 합병 또는 분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외환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2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또는 인민폐와 외국환 파생상품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환국에 비안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등기 철회되거나 파산을 선고 받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4조** 은행은 해당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관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전히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의 경영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외환국은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규정을 이행하는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제15조** 은행은 전문 부문을 지정해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지도하는 관리부문으로 삼는다. 동 관리부문은 본점 및 그 분지기구의 외환관리규정 이행 업무에 협조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인원, 처리인원, 판매인원, 거래원 및 기타 유관 업무인원에 대한 외환관리정책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필요한 정책 법규 지식을 구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에 관한 회계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을 구분해야 하고, 고객 대상 결제 및 매도, 은행 자가 결제 및 매도, 은행간 시장에서의 거래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제18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직무를 다하는 심사”의 원칙에 따라 유관 증빙 또는 상업증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은행은 인민폐와 외환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 진실된 수요가 있는 고객과 위험능력에 적합한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고객, 상품, 거래준비금 등 분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 내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을 심사 확정된 한도액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한도액은 국제수지 현황, 은행의 외환업무 경영 현황, 거시적인 정밀하고 신중한 관리 등 요인에 의거하고 법인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심사 확정한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1조** 인민폐 업무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반드시 중국인민은행 현지 분지기구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인민폐 전용계좌의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동 계좌는 결제 및 매도업무의 인민폐 거래용으로 전용되며, 본 방법 제20조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할 때 경영수요에 따라 스스로 공시화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환율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등 데이터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정한 기타 유관 보고표 및 자료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외환국에 보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조 확인하고 적시에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증빙의 보존제도를 구축하며 업무 종류에 따라 유관 증빙을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그 보존기간은 5년 이상이다.  **제25조** 은행은 외환국의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사실과 다름없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유관 문건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절, 방해하거나 은닉할 수 없다.  **제26조** 외환국은 비(非)현장검사와 현장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감화하며,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감독관리 정보문건(襠案)을 구축하고 이를 완전히 한다.  **제4장 벌 칙**  **제27조** 은행이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외환국 또는 유관 주관부서가 <외환관리조례>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8조** 은행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국이 <외환관리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유관 증빙 또는 상업증표를 심사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을 심사 확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환율 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9조** 은행이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준비금 등 데이터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정한 기타 유관 보고표와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이 <외환관리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은행이 자가 수요에 따라 결제 및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구비한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비(非)은행 금융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별도 규정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 본 방법의 해석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책임진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않는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외환지정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관리 임시방법> (중국인민은행령[2002]4호 발표)과 <중국인민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은발[2004]62호)는 동시 폐지한다. |  | **银行办理结售汇业务**  **管理办法**  中国人民银行令〔2014〕第2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中国人民银行制定了《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经2014年3月26日第4次行长办公会议通过，现予发布，自2014年8月1日起施行。  行长：周小川  2014年6月2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银行办理结售汇业务，保障外汇市场平稳运行，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以下简称《外汇管理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是银行结售汇业务的监督管理机关。  **第三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一）银行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商业银行、城市信用合作社、农村信用合作社等吸收公众存款的金融机构以及政策性银行；  （二）结售汇业务是指银行为客户或因自身经营活动需求办理的人民币与外汇之间兑换的业务，包括即期结售汇业务和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  （三）即期结售汇业务是指在交易订立日之后两个工作日内完成清算，且清算价格为交易订立日当日汇价的结售汇交易；  （四）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是指远期结售汇、人民币与外汇期货、人民币与外汇掉期、人民币与外汇期权等业务及其组合；  （五）结售汇综合头寸是指银行持有的，因银行办理对客和自身结售汇业务、参与银行间外汇市场交易等人民币与外汇间交易而形成的外汇头寸。  **第四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应当经外汇局批准。  **第五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应当遵守本办法和其他有关结售汇业务的管理规定。  **第二章 市场准入与退出**  **第六条** 银行申请办理即期结售汇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金融业务资格；  （二）具备完善的业务管理制度；  （三）具备办理业务所必需的软硬件设备；  （四）拥有具备相应业务工作经验的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  **第七条** 银行申请办理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即期结售汇业务资格；  （二）具备完善的业务管理制度；  （三）拥有具备相应业务工作经验的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  （四）符合银行业监督管理机构对从事金融衍生产品交易的有关规定。  **第八条** 银行可以根据经营需要一并申请即期结售汇业务和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资格。  **第九条** 银行申请即期结售汇业务或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资格，应当由其总行统一提出申请，外国银行分行除外。  政策性银行、全国性商业银行申请即期结售汇业务或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资格，由国家外汇管理局审批；其他银行由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局、外汇管理部审批。  **第十条** 银行分支机构办理即期结售汇业务或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应当取得已具备相应业务资格的上级机构授权，并报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局备案。  **第十一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期间，发生合并或者分立的，新设立的银行应当向外汇局重新申请结售汇业务资格；发生变更名称、变更营业地址、经营结售汇业务的分支机构合并或者分立等情况的，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报外汇局备案。  **第十二条** 银行停止办理即期结售汇业务或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的，应当自停办业务之日起30日内报外汇局备案。  **第十三条** 银行被依法撤销或者宣告破产的，其结售汇业务资格自动丧失。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四条** 银行应当建立、健全本行结售汇业务风险管理制度，并建立结售汇业务经营和风险管理定期评估机制。  外汇局对银行办理结售汇业务中执行外汇管理规定的情况实行定期评估。  **第十五条** 银行应当指定专门部门作为结售汇业务的牵头管理部门，负责督导、协调本行及其分支机构的外汇管理规定执行工作。  **第十六条** 银行应当加强对结售汇业务管理人员、经办人员、销售人员、交易员以及其他相关业务人员的外汇管理政策培训，确保其具备必要的政策法规知识。  **第十七条** 银行应当建立结售汇会计科目，区分即期结售汇和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分别核算对客结售汇、自身结售汇和银行间市场交易业务。  **第十八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时，应当按照“了解业务、了解客户、尽职审查”的原则对相关凭证或商业单据进行审核。国家外汇管理局有明确规定的，从其规定。  **第十九条** 银行办理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时，应当与有真实需求背景的客户进行与其风险能力相适应的衍生产品交易，并遵守国家外汇管理局关于客户、产品、交易头寸等方面的规定。  **第二十条** 银行应当遵守结售汇综合头寸管理规定，在规定时限内将结售汇综合头寸保持在核定限额以内。  银行结售汇综合头寸限额根据国际收支状况、银行外汇业务经营情况以及宏观审慎管理等因素，按照法人监管原则统一核定，外国银行分行视同法人管理。  **第二十一条** 尚未取得人民币业务资格的外资银行，在取得即期结售汇业务资格以后，应当向中国人民银行当地分支机构申请开立结售汇人民币专用账户，专门用于结售汇业务的人民币往来，不适用本办法第二十条结售汇综合头寸管理规定。  **第二十二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时，可以根据经营需要自行决定挂牌货币，并应当执行中国人民银行和国家外汇管理局关于银行汇价管理的相关规定。  **第二十三条** 银行应当及时、准确、完整地向外汇局报送结售汇、综合头寸等数据以及国家外汇管理局规定的其他相关报表和资料，并按要求定期核对和及时纠错。  **第二十四条** 银行应当建立结售汇单证保存制度，区分业务类型分别保存有关单证，保存期限不得少于5年。  **第二十五条** 银行应当配合外汇局的监督检查，如实说明有关情况，提供有关文件、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  **第二十六条** 外汇局通过非现场监管和现场检查等方式，加强对银行结售汇业务的监督管理，建立健全银行结售汇业务监管信息档案。  **第四章 罚 则**  **第二十七条** 银行未经批准擅自办理结售汇业务的，由外汇局或者有关主管部门依照《外汇管理条例》第四十六条第一款予以处罚。  **第二十八条** 银行有下列情形之一的，由外汇局依照《外汇管理条例》第四十七条予以处罚：  （一）办理结售汇业务，未按规定审核相关凭证或商业单据的；  （二）未按规定将结售汇综合头寸保持在核定限额内的；  （三）未按规定执行中国人民银行和国家外汇管理局汇价管理规定的。  **第二十九条** 银行未按规定向外汇局报送结售汇、综合头寸等数据以及国家外汇管理局规定的其他相关报表和资料的，由外汇局依照《外汇管理条例》第四十八条予以处罚。  **第五章 附 则**  **第三十条** 未取得结售汇业务资格的银行因自身需要进行结售汇的，应当通过具有结售汇业务资格的银行办理。  **第三十一条** 非银行金融机构办理结售汇业务，参照本办法执行，国家外汇管理局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二条** 本办法由中国人民银行负责解释。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14年8月1日起施行。此前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外汇指定银行办理结汇、售汇业务管理暂行办法》（中国人民银行令〔2002〕4号发布）、《中国人民银行关于结售汇业务管理工作的通知》（银发〔2004〕62号）同时废止。 |